

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상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3. 7. 3.

발 의 자 : 김상조, 김수민, 김재상, 김정곤,
김정미, 김춘남, 김태근, 이명희,
이수태

1. 개정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일부 조례로 위임한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교육연구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교육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교육연구시설의 범위 확대 (제33조관련 별표 22 제2호라목)
‘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’를 ‘교육연구시설’로 개정

3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「건축법 시행령」

4. 조례안 : 붙임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2 제2호라목 중 “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”를 “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용도지역·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영 제71조,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·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~ 21. (생 략)	제33조(용도지역·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21. (현행과 같음)
【별표 22】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33조) 1. (생 략) 2. (생 략) 가. ~ 다. (생 략)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마. ~ 아. (생 략) 23. (생 략)	【별표 22】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. ~ 아. (현행과 같음) 23. (현행과 같음)

[관련 법령]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76조(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) ① ~ ④ 생략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09.4.22, 2011.8.4>

1.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.

2. ~ 5. 생략

⑥ 생략

[전문개정 2009.2.6]

[시행일:2012.7.1] 제76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78조(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.

② 생략

[별표 23] <개정 2012.4.10>

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78조관련)

1. 생략

2. 도시·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. 다만,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·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)

가. ~ 바. 생략

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

아. ~ 파. 생략

□ 건축법 시행령

[별표 1] <개정 2013.5.31>

용도별 건축물의 종류(제3조의4 관련)

1. ~ 9. 생략

10. 교육연구시설(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
가. 학교(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전문대학, 대학, 대학교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)

나. ~ 바. 생략

11. ~ 28. 생략